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금융실명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17. 7. 26.] [총리령 제1406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금융위원회 (은행과) 02-2100-2676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5.>

제2조(금융자산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 12. 5.>

- 1.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
- 2.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

제3조 삭제 <2014. 12. 5.>

제4조(금융회사등 감독·검사기관의 장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·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4. 12. 5.]

제5조 삭제 <2014. 12. 5.>

부칙 <제1406호,2017. 7. 26.>(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